2024학년도

더불어 미래의 꿈을 키우는 민주적인 어린이 육성

군산문화교육 설명회

2024. 3. 21.(목) 14:40



군산문화초등학교

일정 안내

순	시간	운영 내용
1	14:40~14:45	○ 등록, 개식사 및 축사
2	14:45~15:10	○ 학교 현황 및 교직원 소개 ○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소개 및 학부모 연수
3	15:10~16:10	○ 주제 강연-자기주도학습(초빙강사: 임운나)
4	16:10~16:15	○ 폐식사

차 례

I. 학교교육과정 안내	
1. 학교 현황	1
2. 학교 교육 기본방향	2
3. 교육과정 운영 일정	3
I. 학부모 연수	
1. 교권이해 및 교권보호 안내	5
2. 학교폭력예방교육	Ç
3. 가정폭력예방교육	- 1 1
4. 아동학대예방교육	- 12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 13
6. 학생인권교육	
7. 장 애 인 식 개 선 교 육	- 17
8. 도박중독예방교육	- 19
9. 2022 개정교육과정 안내	- 2 2
10. 공교육 정상화법 안내	- 25
11. 흡연예방교육	- 27
12. 감염병예방교육	- 29
13. 양성평등교육	- 3 (
14. 성폭력예방교육	
15.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34
16. 교육복지 중점학교안내	3 5

1. 학교 현황

1. 학교 연혁

.

년 월 일	연 혁 개 요
1970.06.20.	▶ 군산금광국민학교에서 분리 개교(10학급)
1988.08.01.	▶ 군산월명국민학교로 분리(총 441명)
1996.03.01.	▶ 군산문화초등학교로 개명
2005.03.02.	▶ 병설유치원 개원(2학급)
2005.11.21.	▶ 도지정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개최
2006.03.01.	▶ 군산진포초등학교로 분리(총 248명)
2011.03.01.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 학교 지정
2015.03.01.	▶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 대상 학교 지정
2017.12.31.	▶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학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2022.03.01.	▶ 제18대 이수미 교장 부임
2023.02.10.	▶ 제53회 졸업(42명, 총 10,130명)
2023.03.01.	▶ 초등 13학급(특수 2학급 포함), 신입생 21명 입학

2. 학교 현황

(2024.3.1. 기준)

학년 구분	1	2	3	4	5	6	사랑반 보람반	계	유치원
학급수	2	1	2	2	2	2	2	13	1
학생수	21	18	32	35	34	29	12	169(12)	3

3. 교직원 현황

(2024.3.1. 기준)

구분 성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초등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유지원	행정 실장	주무관	교무 실무 사	율 광 직	조리 종사 원	ᅸ 강사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교육 복지 사	투수 기간 제 과	특수 교육 지도사	유 유 교 교 교	방과후 보조 인력	돌봄 전담 인력	사회 복무 요원	Э
남		1	2	1				•		1		1										1	7
여	1		2	8	1	1	1	1	1	1	1	1	3	1	1	1	1	1	1	1	2		31
계	1	1	4	9	1	1	1	1	1	2	1	2	3	1	1	1	1	1	1	1	2	1	38

4. 시설 현황

(2024.3.1. 기준)

		교지			교	실					7 4			
구분	대지	체육장	건물	계	보통 교실	관리실	특별실	다목 적실	체육관	계	화장실	식생활관	창고	급수 전실
수량	7,210	8,942	5,458	21,610	40	2.5	5	1	1	49.5	12	1	2	64

2. 학교 교육 기본방향

1. 군산문화교육의 기본방향

.

문 화 교 육 지 표

『 더불어 미래의 꿈을 키우는 민주적인 어린이 육성 』



문 화 교 육 목 표

- 스스로 배우며 미래를 가꾸는 어린이
- 열린 생각으로 꿈을 키우는 창의적인 어린이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어린이
-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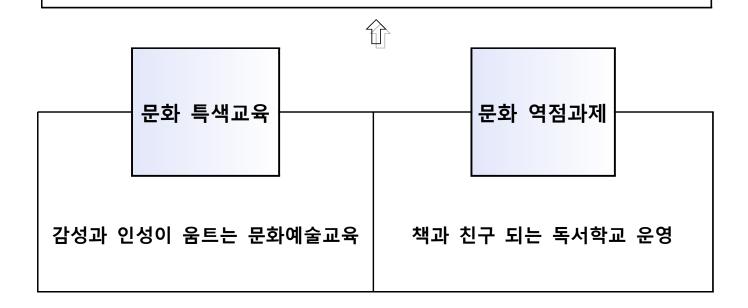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3. 교육과정 운영 일정

.

.

2024학년도 1학기

0000000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금		삼일절	1	월			1	수		재량휴업일	1	토		1	월		1	목	
2	토			2	화	학 부		2	목			2	일		2	화	아동학대예방교육	2	금	
3	딦			3	수	학부모상담주간		3	금			3	월		3	수		3	토	
4	월	시입	1식 및 입학식	4	목	무간		4	토			4	화		4	목		4	일	
5	화			5	금	_	장애인식개선교육	5	일		어린이날	5	수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5	금	독서골든벨 (1~6)	5	월	
6	수			6	토			6	월		대체휴일	6	목	현충일	6	토		6	화	
7	목			7	일			7	화			7	마		7	일		7	수	
8	마			8	월			8	수			8	토		8	월		8	목	
9	토			9	화	꿁	학교(성)폭력예 방교육	9	목	수	-상안전교육(3,4)	9	일		9	화	<u></u>	9	금	
10	뎰			10	수	꿈끼탐색주간	국회의원선거	10	금	수	·상안전교육(3,4)	10	월		10	수	다 꿈 교 육 	10	토	
11	월			11	목	주 간		11	토			11	화		11	목	주 간	11	일	
12	화	학 생		12	금			12	일			12	수		12	금		12	월	
13	수	학생상담무간		13	토			13	월	수	-상안전교육(3,4)	13	목		13	토		13	화	
14	목	주 간	학업성취도 자율평가(3,5)	14	일			14	화	수	-상안전교육(3,4)	14	금		14	일		14	수	
15	금		학업성취도 자 율 평가(6)	15	월			15	수		부처님 오신날	15	토		15	월	т	15	목	광복절
16	토			16	화		과학의날	16	목			16	일		16	화	정 보통신원리주간	16	금	
17	딦			17	수			17	금			17	超		17	수	신윤	17	토	
18	월			18	목			18	토			18	화	흡연,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8	목	리 주	18	일	
19	화	개별		19	금			19	일			19	수		19	금	1	19	월	
20	수	별화협의주간		20	토			20	월			20	목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20	토		20	화	여름개학식
21	목	구 간	교육과정 설명회	21	일			21	화	ģ	학부모수업공개	21	금		21	일		21	수	
22	금			22	월	스		22	수			22	토		22	월		22	목	
23	토			23	화	포		23	목			23	일		23	화		23	금	
24	일			24	수	리구주간	실모내일하스	24	금		소방훈련교육	24		_	24	수		24	토	
25	월	7.1	70131011471	25	목	주간	현장체험학습 (1~6)	25	토			25	화	통 일 교 육 	25	목		25	일	
_26	화	선	교어린이선거 (4~6)	26	금	_		26			I	26	\vdash	육	26	금	여름방학식	26	월	
_27	수			27	토			27	월	_		27	\vdash	^주 간	27	토		27	화	
28	목			28	일			28	화	교육복지주간	학생 인권의 날	28	금		28	일		28	수	
29	금			29	월			29		칙		29	토		29	월		29	목	
30	토			30	화			30	목	<u>주</u>		30	일		30	화		30	금	
31	_						31							31	수		31	토		
	엘		20일	수	업일		21일	수	업일		20일	수입	벨	18일	수	업일	20일	솬		9일
1약/	학년계 99일 (여름방학 24일)											딱 24일)								

2024학년도 2학기

	9월 10월			월			11	월			12월			1월	2월				
1	일		1	화			1	금			1	일		1	수	신정	1	토	
2	월		2	수			2	토			2	월		2	목		2	일	
3	화	- 개 별	3	목		개천절	3	일			3	화	독 도	3	금		3	월	겨울개학식
4	수	별 화협이 주 간	4	금		재량휴업일	4	월			4	수	요 육 간	4	토		4	화	
5	막	구 간	5	토			5	화	문하		5	목	구 간	5	일		5	수	
6	급		6	일			6	수	문화예 술주간		6	금		6	월		6	목	종업식 및 졸업식
7	토		7	월	바		7	목	수 간		7	토		7	화		7	금	
8	일		8	화	마하		8	금		학습발표회	8	일		8	수		8	토	
9	월		9	수	භ 과 우수업 광 가수 간	한글날	9	토			9	월		9	목		9	일	
10	화	동	10	목	개 주		10	일			10	화	교	10	금		10	월	
11	수	동 료 장 학 간	11	금	간	소방훈련교육	11	월			11	수	교 목 지 구	11	토		11	화	
12	목	주 간	12	토			12	화	독서		12	목	^주 간	12	일		12	수	
13	금		13	일			13	수	독서활동주간		13	금		13	월		13	목	
14	토		14	월			14	목	수 간		14	토		14	화		14	금	
15	ᆒ		15	화	테 진호	마식현장체험 로현장체험학습	15	금			15	일		15	수		15	토	
16	월	추석연휴	16	수	테	마식현장체험	16	토			16	월		16	목		16	일	
17	화	추석	17	목			17	일			17	화		17	금		17	월	
18	수	추석연휴	18	금			18	월			18	수	정보통신윤리교육	18	토		18	화	
19	목		19	토			19	화	학/ 성	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19	목		19	일		19	수	
20	금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20	일			20	수			20	금		20	월		20	목	
21	토		21	월	Q	형어체험센터 (5)	21	목			21	토		21	화		21	금	
22	일		22	화	ò	형어체험센터 (5)	22	금			22	일		22	수		22	토	
23	월		23	수		영어체험센터 (5)	23	토			23	월	가정폭력예방교육	23	목		23	일	
24	화		24	목		영어체험센터 (5)	24	일			24	화	119안전체험 (2,5)	24	금		24	월	
25	수	장애인식개선교육	25	금	ģ	영어체험센터 (5)	25	월			25	수	성탄절	25	토		25	화	
26	목		26	토			26	화			26	목		26	일		26	수	
27	금		27	일			27	수			27	금	겨울방학식	27	월		27	목	
28	토		28	월	치		28	목			28	토		28	화	설날연휴	28	금	
29	일		29	화	누사		29	금			29	일		29	수	설날			
30	월		30	수	친구사랑주간		30	토			30	월		30	목	설날연휴			
												화		31	금				
수입		18일	수	업일		20일	수	업일		21일		겁일	19일	수	업일	0일	수	업일	4일
2학7	2학/노계 91일																		

※ 수업일수 : 1학기 99일, 2학기 91일 계: 190일

1. 교권이해 및 교권보호 안내

0	-	-		-	-	400
1			•			
•	-	-		-	400	
		•		•		

가

.

교권보호의 이해

-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권에 대한 이해

"교권이 바로 걸 때 학교교육이 살아납니다."

- □ 교권(敎勸):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 🥚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 학부모나 학교 외부 인사가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부당한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 교권침해 예방 자료

◎ 교권침해란?

□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 교권침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등이 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휴대폰 문자 메세지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교사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방에 교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욕설 글을 남기는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 □ 명예훼손 피해는 폭언·욕설·협박 등의 부당 행위와 유사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전보 요구나 사직 강요,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학부모가 개입하여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교육부 '학부모 교육자료' 내용 발췌

첫 번째는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준비물을 챙겨주고 자녀의 학습과제를 같이 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u>두 번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동입니다.</u>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체계나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됩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학습 지도, 진로·진학지도 등 학부모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u>마지막으로 학교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u>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논의 하고 결정하며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학교교육을 위한 관심과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십계명■

- ◎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७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 ◎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 ◎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 ◎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와의 소통 강화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교육 및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서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부모는 학부모회 참여, 학교홈페이지 방문,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자료 열람 등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및 자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수 업에 참관하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녀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교사와의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주간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 방문하기 편한 시간에 담임교 사와 약속을 정하여 자녀교육에 대하여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u>저희 학교는 학</u> 기별로 1회, 1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TIP :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교육



- **가. 학교폭력이란 :**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 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나. 학교폭력의 유형 :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협 및 협박,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 제적인 심부름 등 여러 유형이 있음
 - 1)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 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2) 사이버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 복적으로 심리적 공격 또는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다. 학교폭력의 이해

피해

징후

.

.

- 1)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 :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머리 툭툭 건드리기, 눈 흘 기기 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 력'임.
- 2)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래 친구들,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꼭 필요함.
- 3)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다 : '일진'등 집단폭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웃 학교 일진회와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공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도 지속적으로 괴롭힘.
- 4) 신고가 최선의 예방 : 학교폭력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가해학생의 설 자리 는 없어짐.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라. 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 ▶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 멍자국을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 친구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학생의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
 - 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 이유없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 ▶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 부모에게 이유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학생의

-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마.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해

징후

피해

학생

경우

가해

학생

경우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부모의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부모의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바. 다양한 신고 방법

- 1)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에게 신고하기
- 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 국번없이 117, 24시간 운영, 피해사실을 설명, 긴급상황시 경찰출동, 긴급구조.
- 3) 핸드폰 문자신고 #0117 : 받는 사람을 #0117로 눌러 신고.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고 전송. 전송 된 문자는 Dream 관리자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4)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접속

3. 가정폭력예방교육



가. 가정폭력이란?

.

.

-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나.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다. 가정폭력의 유형



라. 가정폭력 발생시

- 국번없이 112에 신고
- 가정폭력 상담 및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은 다누리콜 (1577-1366)에 전화

마. 가정폭력 발생시 지원제도

- 보호시설(쉼터)입소지원: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
-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1644-7077)
- 의료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지원
-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 있을 때 취학 지원

바. 가정폭력 예방 노력

- 상대방을 소유·통제하려 하지 않기
- 평등한 관계 인식 노력하기
-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 평등한 가정 분위기 만들기
- 성 역할 고정관념 버릭
- 구성원 간 서로 소통하기







4. 아동학대예방교육



가.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이란 :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 1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야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3조 제3호)

나. 아동학대범죄란?

- -'아동 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4호>
- 1) 형법상 범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등
- 2) 아동복지법상 범죄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 3)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한다.
-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준다.
-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한다.
-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진다.
-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기울여 준다.
-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준다.
- 부모 자신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준다.

라.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 발견즉시 112 신고, 증거 확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 관계법령;

〈아동학대 처벌법 제 63조제2항>

신고 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 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 료 부과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의 2항>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 는 안 됨.

5. 지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및 지적변화가 가장 빠른 시기이며 부모와의 갈등도 증가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아이들의 정서적 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연수 자료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의 경우에 자살위험이 증가합니다.

- 가. 우울 및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 나. 가정 내 신체적 · 언어적 폭력, 방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다.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 라. 학기 초나 시험기간

.

- 마.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수능시험, 대입 면접 등을 치른 경우
- 바. 갑작스러운 가족 및 친구의 죽음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
- 사. 반복적인 자해행동 및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2.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나.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다.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라.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마.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바. 사람들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 사.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아.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자.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차.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카.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타.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 파.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3. 자녀가 상기 위험 징후를 보일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 관찰되는 징후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 요새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나.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너무 힘들거나 절망적일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데...,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니?" "네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 다.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1)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 2)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 라.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지 말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X)
"그건 나쁜 생각이야" (X)
"힘들면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 별 거 아니야." (X)
"그랬구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O)

마. 표현을 한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엄마(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 줘서 고마워."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 줄 테니 함께 해결해보자."

- 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1)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아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2) 특히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아이가 다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시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4. 구조요청전화 및 상담소 안내

- ※ 생명의전화(1588-9191, www.lifeline.or.kr)
- ※ 사랑의전화(1566-2525:www.counse124.com)

6. 학생인권교육



가. 학생인권의 개념

1) 학생자유권

.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학생복지권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① 교육에 대한 권리 / ② 건강권 / ③ 안전권 / ④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⑤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⑥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⑦ 권리를 지킬 권리

3) 학생 평등권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학생인권의 제한

-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세계인권선언 제30조)
- 2)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 (인권교육의 중요성)

■ 학생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 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 개인의 인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족의 인권 지수는?

♣ 학생이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	∃ ×	На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071 51 7111 511100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 4개-7개 인권 노력이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 8개 이상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 │ 해요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011 II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 ○	∃ ×	비고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 이가 몇 개나 되나요?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 8개 이상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 해요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의사소통,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7.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해야 한다.



.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라고 지칭해도 되나요?

장애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무시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해 장애인이란 말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란 말은「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의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게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서 우리의 책임을 되새기며 써야 함을 자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상대방을 "사람아" "한국인아"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으로 불러야 함을 꼭 지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존중하며 예절을 지켜요.

- 올바른 용어 사용하기 : **장애인**(장애우X), **비장애인**(정상인X)
-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기
-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궁금해요!

-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3)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차별받지 않으며 또래와 함께 개개 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u>통합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u> 정하고,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자, 배움의 기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맞습니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 주변에서 보던 장애인 상징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부자연스럽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표시는 1968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단순 하게 표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용 리프트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상징을 잘 살펴보면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팔과 다리는 로봇처럼 굳어있고, 손은 부자연스럽게 뻗어 있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움직일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런과 브라이언 글렌니는 기존의 장애인 상징에 대해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장애인 상징**을 제안합니다.

#역동적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적인 사람



그들이 제안한 장애인 상징은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상징의 각 부분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 1. 머리의 위치: 앞으로 숙어져 있는 머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 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 2. 팔의 각도: 뒤를 향해 있는 팔은 마치 움직이는 듯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 3. 휠체어: 흰색 사선이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성을 느껴지게 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은 '엑세서블 아이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 결과 2014년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장애인 상징을 변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8. 도박중독 예방교육

학생들의 사행심('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 난 뽑기방, 온라인 게임 상의 아이템 거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입니다. 이에 청소년이 주로 경험하는 사행성 게임의 유형, 자녀의 사행성 게임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 사행성 게임 문제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의 모든 도박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사행산업관련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및 언론보도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학년 별 위험 및 문제군 비율 위험군 🔳 문제군 '15년 '18년 위험집단 1.1% 1.5% 문제군 2.7% 4.0% 4.9% **3**%p 1.7% 94.9% 93.6% 1.1% 1.1% 4.6% 4.4% 4 5%

지역별 위험 및 문제군 비율

비문제군 79.0% 위험군 12.5% 문제군 8.5%

.

.

학교 밖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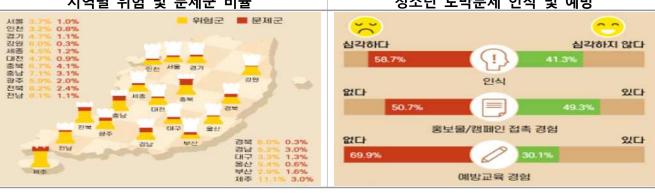
중3

11

卫2

.

.



중1

중2

※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 o '15년 조사대비 '18년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의 비율은 **1.3%** 상승**(5.1%→** 6.4%)
- ㅇ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제군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2.2% 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조사됨
-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충북(4.1%)**, 충남(3.1%), 경남과 제주(각3.0%) 비율로 조사됨
- o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재학 중 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함, 그에 반해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30%에 불과함

<최근 언론 보도>

- ▶ [한마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위험 수위 넘었다 [조선일보 19. 2 .14]
- ▶ 도박에 물든 청소년, 2차 범죄 우려 [금강일보 19. 1 .28]

- ▶ '도박에 빠진 아이들'... 교육 당국 예방교육은 미진 [뉴스핌 19. 1. 16]
- ▶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는 돈, 평균치 10배 넘어 [아시아경제 18. 12. 25]
- ▶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입건 청소년 402명** [이데일리 18. 10 .22]
-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 -게임 속 유료 확률형 아이템 또한 사행성이 높음.



- o SNS를 통한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 접근
- SNS,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확산
- 청소년들이 이용자 **모집책인 총판**을 담당하기도 함(모집 이용자가 돈을 잃으면 10~30%, 돈을 따면 1~3%의 이익을 취함)
- ㅇ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절차가 없이 이메일 및 계좌번호만으로 가입 가능하여 쉽게 노출
- ㅇ 사행성게임 : 불법 스포츠도박(사설토토), 불법 인터넷도박(사다리, 달팽이, 소셜그래프 등)

□ 도박문제 발생의 징후 <금전문제> <도박행동> o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 ㅇ 집단으로 모여 친구들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 리고 갚는 것이 자주 발생한다. 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o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 o 도박 관련 용에나 은어를 자주 사용한다(토쟁이총판맥튀 다 o 알 수 없는 명의로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 ㅇ 스포츠 경기 결과에 민감하다. 다.. <대인관계> <가정생활> ㅇ 부모님께 거짓말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무언 o 대인관계에서 짜증이나 신경질을 자주 낸다. 가 숨기려고 한다.(혹은 대화를 피한다.) o 딴 생각이 잦아지고 혼자 있으려 한다. o 가족의 돈을 훔치거나 집안의 귀중품이 없어진 o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다.

□ 자녀가 사행성 게임에 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사행성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ㅇ 자녀에게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 o 자녀를 윽박지르고 야단치기 보다는 왜 게임을 하게 되었는지, 게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경청합니다.
- o 학교에 문제를 알리고, 전문적인 상담(1336)을 요청합니다.

1 11 2 11 2 2 1 7 2 2 1 2 3 3 3 2	0 1 1 1
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 전문상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u>http://www.kcgp.or.kr</u>) →예방홍보→예방교육→교육신청 - 예방교육 문의: 예방사업팀 담당자(☎02-740-9032)	온라인상담:도박문제넷라인(http://netline.kcgp.or.kr)접속후채팅/게시판상담이용전화상담및 상담신청:국번없이1336(24시간364일상담가능)
[당부의 말씀] 자녀에게 문제 발견시 전문기관의 도움 이 최우선입니다	문력인성담은 또박문제(계인 https://netline.kcgp.or.kr 로바없이 1336 (24시간 365일 운영)

9. 2022 개정교육과정 안내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개정 배경

.

-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
-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 중요
-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 교육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와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 요구 증가

□ 구성 중점

-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도성 함양
-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
-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 지속 가능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
-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 강화
-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 개선
-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 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가능

□ 추구하는 인간상

- 자기주도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교양 있는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역량	의 미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		
시/1년년 ㅋ७	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기시지H키킈 여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		
지식정보처리 역량	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		
경기적 개고 국당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역량		
처러져 시트 여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		
협력적 소통 역량	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 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		
코드레 서라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		
공동체 역량	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역량		

# '15개정교육과정과 '22개정교육과정의 차이점

구분		, u	주요 내용		
		"是	2015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ul> <li>창의융합형 인재 양성</li> <li>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li> <li>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li> <li>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li> </ul>	<ul> <li>○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li> <li>○ 모든 학생이 언어·수라·디지털소양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li> <li>○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역량 함양 교육</li> <li>○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li> </ul>	
冬 足	공통사항	핵심역량 반영	<ul> <li>총론 '추구하는 인간상' 부문에 6개 핵심역량 제시</li> <li>교과별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li> <li>※ 일반화된 지식, 핵심개념, 내용요소, 기능</li> </ul>	<ul> <li>총론 6개 핵심역량 개선</li> <li>: 의사소통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li> <li>교과 역량을 목표로 구체화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체계 개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적정화</li> <li>※ (개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li> </ul>	
		역량함양 강화	○ 연극교육 활성화 - (초·중) 국어 연극 단원 신설	더지털 기초소양, 자기주도성, 지속기능성, 포용성과 시민성, 창의와 혁신 등 미래시회 요구 역량 지향	
		소프트 웨어 교육 강화	○ (초) 교과(실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교육으로 개편	▶ 모든 교과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 (초) 실과 + 학교 자율사가 등을 활용하여 34시가 이상 편성	
		안전교육 강화	○ 안전 교과 또는 단원 신설 - (초1~2) 「안전한 생활」 신설(64시간)	○ <u>체험·실습형</u> 안전교육으로 개선 - (초1~2)통합교과 주제와 연계(64시간)	

구분		7 W	주요 내용			
		"七	2015 개정	2022 개정		
			- (초3~고3) 관련 교과에 단원 신설	- (초3~고3) 다중밀집도 안전을 포함하여 체 함실습형 교육 요소 강화		
		<b>학습주제</b> ○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재구조화 <u>※ (초·중등교육법 개정</u> )		○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유지 ※ ( <u>초·중등교육법 개정</u> )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하도록 관련 법 개정		
		창의적 체험 <del>활동</del>	<ul> <li>창의적체험활동 내실화</li> <li>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4개)</li> </ul>	<ul> <li>창의적 체험활동 <u>영역 개선(3개)</u></li> <li>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li> <li>※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과 연계 가능</li> </ul>		
총이 많	초등학교		<ul> <li>주당 1시간 증배, '안전한 생활' 신설</li> <li>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중심 교육으로 실시</li> <li>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 강화(한글교육 강화)</li> </ul>	<ul> <li>입학초기적응활동 개선</li> <li>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실시</li> <li>기초문해력강화, 한글해득 강화를 위한 국어 34시간 증배</li> <li>누리과정의 연계 강화(즐거운생활 내 신체활동 강화)</li> </ul>		
			<ul><li>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강화</li></ul>	<ul><li>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의 유기적</li><li>연계 강화</li></ul>		
교과교육과정 개정 방향			<ul> <li>교과교육과정 개정 기본방향 제시</li> <li>핵심개념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li> <li>핵심역량을 반영</li> <li>학생참여중심 교수학습방법 개선</li> <li>과정중심 평가 확대</li> </ul>	<ul> <li>교과교육과정 개정 기본방향 제시</li> <li>핵심아이디어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li> <li>교과역량 교과 목표로 구체화</li> <li>학생참여중심, 학생주도형 교수학습방법 개선(비판적 질문, 글쓰기 등)</li> <li>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개별 맞춤형 피드백 강화</li> </ul>		
지원 체제		교과서	○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소통협력을 이끄는     교과서 개발		

# 나 '22개정교육과정의 적용 시기

### ☞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됨

- '24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 '25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10. 공교육 정상화법 안내

. . . . . . . .

. . . . . . . .



####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 . . . . . . .

. . . . . . .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2. 선행학습의 문제점

-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1)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 2)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
  - 3) 점검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나. 방과 후 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5.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11. 흡연예방교육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 흡연자의 질병 발생 가능성은 성인 흡연자보다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와 발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보다 중독이 쉬운 반면 끊는 것이 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흡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담배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⑤ 화학물질 첨가: 담배 잎을 말려서 잘게 썰고 담배의 특유한 맛을 내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는데 특히, 담배가 타면서 4,000여종의 화학적 유해 물질이 발생하며 이 중에는 20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 발암물질 : 암모니아, 나프탈렌, 아세톤, 다이옥신, 부탄가스, 포르말린, 비소, 청산가리 등 원 인체에 해로운 대표적 3가지 성분

- (1) <u>타르</u>: 담배가 탈 때 생기는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 함유
- (2) <mark>니코틴</mark>: 담배의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흡연할 때 폐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뇌까지 최소 7초 만에 도달. 금연 시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 금단 증상 발생
- (3) <u>일산화탄소</u>: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여 저산소증의 원인이 됨. 흡연자는 만성 피로와 조기 노화에 시달림. 학습 부진의 원인

### 2 흡연과 암?

전체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 하는 부분에 대한 대표성 있는 제시는 찾아보기 힘드나, 미국의 Cancer Prevention Study II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현재 흡연자에서 모든 암 사망에서 흡연 기여율은 남성에서 52%, 여성에서 43%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흡연 기간 및 흡연량에 따라 암 발생 위험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흡연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이며, 실제 흡연과 **폐암**을 비롯한 **위암, 식도암, 구강암, 후두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백혈병, 자궁경부암** 등의 암 발생 간의 원인적 연관성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확실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주요 암 발생에 있어 흡연의 영향도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 3 흡연과 사망?

세계적으로 2015년도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생물로 인한 사망은 약 33%**(약 212만명), 호흡기계 질환 약 29%(약 187만명), 심혈관 질환 약 29%(약 186만명), 소화기계 질환 약 3%(약 20만명), 당뇨 약 2%(약 13만명), 하기도감염 약 2%(약 15만명), 결핵 약 1%(약 9만명) 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담배로 인해 약 1억 명이 사망하였으며, 흡연율이 현재의 추세로 지속된다면 21세기에는 담배로 인해 약 10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4 간접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등의 표면에 달라 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흡연자가 머물렀던 공간이 비흡연자의 건강 을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 자재나 벽지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새집 증후군과 비슷합 니다.

### 5 청소년 흡연이 위험한 이유?

- ☆ 담배의 악영향 : 성장발육 저하, 기침 및 가래 증가, 두통, 학습 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입 냄새, 피부노화, 중이염, 소화불량, 수전증
- ♣ 청소년의 신체 세포조직 기관들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담배와 같은 독극물이 몸에 들어오면 더욱 해롭습니다.
- ♣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피우면 어른이 되어 피우는 것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심하게 걸리게 되며. 담배를 더 오래 피우게 될 확률이 높아 담배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 청소년 탈선은 흡연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 6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유혹 및 압력을 이겨내도록 부모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신념을 보여주고, 그 신념이 자녀와 일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12. 감염병 예방교육



#### □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감염'이라고 하며 감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환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은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 1. 감염병 전파(확산) 방지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등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평소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고른 영양 섭취,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잘합니다.

#### 2. 등교중지 대상자

- 등교중지 대상자
  - ➡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감염병 의심환자, 법정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 ➡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3. 등교중지 방법

-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을 하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완치 후 **진료 확인서(또는 진단서,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확인서에 감염성 **질환명, 격리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치 료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4. 유의사항

- 감염병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다르므로 전문의가 지정한 기간에는 가정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병원 진료 외 외출 금지, 학원도 가지 않습니다.)
-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감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양성평등교육

### 1. 양성평등 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손상 당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되며, 가족과 사회의 번영에 동참하는 길이 봉쇄되어서도 안 되며, 인류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 2. 양성평등 교육이란?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 3. 성역할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

남녀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이 하는 역할과 여성이 하는 역할은 변함없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에 따라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고정된 성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습관은 가정에 서부터 시작됩니다.

### 4.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

<u>평등한 부부란?</u> 남편과 아내가 성 구분에 의해 역할 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

- 1)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2)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 3)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

요리, 설거지, 빨래 정리, 물건 나르기, 육아 등 모든 일들을 남·여 구별 없이 서로 도와 가족 모두가 함께 한다면 집안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느끼는 가운데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이 생활화되면 자녀가 장차 결혼 후에 평등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2) 가정에서부터 생물학적 성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최소화하면 자녀들이 남녀가 아닌 개인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정내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성 중립적인 자녀 교육

###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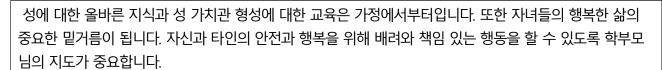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 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시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합니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남성 위주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파생된 성차별 의식** 때문에 발생하기 쉬우므로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양성평등 교육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성폭력예방교육

. . . . . . .





###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 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성폭력은 가해자는 누구?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가족 및 친척
65.8%	18.8%	15.4%

#### 3. 또래 친구끼리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은?

- 가. 야한 말이나 농담,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 등 SNS로 보냄
- 나.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말함
- 다. 장난하는 척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를 들추는 행위
- 라. 장난하는 척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지는 행위
- 마. 외모에 대한 별명을 지어서 놀림
-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이며 처벌 대상임을 기억해요.

####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성에 대한 느낌과 가치관은 부모님을 보고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하는 모습과 존중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입니다.
- 라.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마.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바. 위험한 상황을 알아채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 방법을 알려 줍니다.
- 사.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아. 부모님은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고운 말,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5. 성폭력 피해 자녀, 부모님의 대처 및 방법

- 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고, 믿어주고, 감싸 주고, 보호해 줍니다.
- 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이의 표정, 행동 등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 다. 발생한 장소, 날짜, 시간, 가해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 자녀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 라. 성폭력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며,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 마.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성폭력 피해 전문기관(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의료지원, 심리상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
-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서 (국번없이 117)
- ▶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063-246-1375)

### 15. 존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연수 지료



### 1. / 촌지 및 불법찬조금 정의

### 가. 촌지란

. . . . . . . .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며 건네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교육계의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임

### 나.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임

### 2. /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 가. 촌지 유형

- 1)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2)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 나. 불법찬조금 유형

- 1)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2)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3)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i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9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42 예산과)
- ※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16. '아름드리 꿈터' 교육복지 중점학교 안내



### 1. / 운 영 목 표

. . . . . . . .

- 가.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 통합적 성장 지원
- 나.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별 격차를 줄이는 문화 교육복지
- 다.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교육복지 내실화 및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 2. / 중점 방향

- 가. 학생 개인별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 랑, 꿈, 믿음이 있는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학교
- 나. 정례화 된 사례회의와 동학년 협의회로 학생 발굴 및 모니터링 지원
- 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운영으로 배움과 성장을 통한 꿈 키우기
- 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 3. 세부 추진 내용

영역	지원내용		시	대상
0 T	프로그램명	로그램명 세부내용		네ớ
학생파악	학생파악 및 발굴	재학생, 신입생 파악 및 선정기준 마련 지원		
	가정방문	가정환경, 주변환경, 학부모,학생 욕구 파악		전교생
	110111 =101	신입생을 대상으로 미술검사 (HTP 등)를 통해 심리적인 부	연	
	신입생 파악	분을 파악하여 정서적 지원 실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급 프로그램 학급적응 프로그램 -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려, 양보, 규칙지키기 등 놀이활동 실시		중	(GTE 9)
	개별면담	강점 검사 등을 통한 학생 개별 면담		
	개별지원계획수립	맞춤형지원대상 전체 개별지원계획 수립		
	학교생활지원	코로나상황에 따른 긴급지원 및 건강지원		
	가족기능강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별지원 언어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개별 상담 지원 집단지원 놀이를 통한 사회적 상황 기술 및 화용언어능력 향상 교실 회복적 생활교육 역할극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일상생활기술증진 기본생활습관에 대해 인식하고 일상생활기술 개선 문화기자단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기주도적 봉사동아리		연 중	학생/ 학부모/ 교사
맞춤형지원				
	창의탐구능력향상 학생욕구에 맞는 자율동아리 운영 지원			
	진로활동	지역기관과 연계한 진로 활동 진행		
	사제동행	교사1명 학생 1~2명으로 학교생활 상담 정서지원 등 실시		
	학교간 공동사업	선후배 관계 맺기를 통해 타인과 밀접한 의사소통방법 및		
	선후배 멘토링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환경조성	학급행복동행	학생과 교사의 응집력 프로그램/학급진행	연	학생/

	주제별프로젝트 학교문화조성 신나는마을 네트워크 교직원 연수	교육복지 가치 역량 중심의 주제별 프로젝트 교육복지주간을 활용한 학교문화조성 활동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공동체 활동 학생 이해 및 상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진행	- - 중	학부모/ 교사/ 지역기관
	교육복지위원회 동학년협의회	운영계획심의 및 예산심의, 학생선정기준 심의 확정 대상학생 발굴 및 지원순위 구분, 사례관리학생 및 대상학생 협의	- 연	학생/ 교사
운영지원	사례관리팀	사례관리대상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외부전문가 활용 슈퍼비전 진행	중	
	교육복지실운영	교육복지관련 업무 수행 및 연계학교 지원		
영역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세부내용	시기	대상
	학생파악 및 발굴	재학생, 신입생 파악 및 선정기준 마련 지원		
	가정방문 신입생 파악	가정환경, 주변환경, 학부모,학생 욕구 파악 신입생을 대상으로 미술검사 (HTP 등)를 통해 심리적인 부		
학생파악	학급적응 프로그램	분을 파악하여 정서적 지원 실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급 프로그램 -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려, 양보, 규칙지키기 등 놀이활동 실시	연중	전교생
	개별면담	강점 검사 등을 통한 학생 개별 면담		
	<u>개별지원계획수립</u> 학교생활지원	맞춤형지원대상 전체 개별지원계획 수립 코로나상황에 따른 긴급지원 및 건강지원		
	가족기능강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별지원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지원 놀이를 통한 사회적 상황 기술 및 화용언어능력 향상 교실		연중	
	회복적 생활교육			
맞춤형지원	일상생활기술증진			
	문화기자단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기주도적 봉사동아리			
	창의탐구능력향상	학생욕구에 맞는 자율동아리 운영 지원		
	진로활동	진로활동 지역기관과 연계한 진로 활동 진행		
	사제동행	교사1명 학생 1~2명으로 학교생활 상담 정서지원 등 실시		
	학교간 공동사업 선후배 관계 맺기를 통해 타인과 밀접한 의사소통방법 및			
	선후배 멘토링 학급행복동행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학생과 교사의 응집력 프로그램/학급진행		학생/
	<u></u> 주제별프로젝트	교육복지 가치 역량 중심의 주제별 프로젝트		학부모/
환경조성	학교문화조성	교육복지주간을 활용한 학교문화조성 활동	연중	리구도/ 교사/
	신나는마을 네트워크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공동체 활동		지역기관
	<u>교직원 연수</u> 교육복지위원회	학생 이해 및 상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진행 운영계획심의 및 예산심의, 학생선정기준 심의 확정		시크시킨
운영지원	<u> </u>	대상학생 발굴 및 지원순위 구분, 사례관리학생 및 대상학생 협의		
	사례관리팀	사례관리대상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외부전문가 활용 슈퍼비전 진행	연중	학생/ 교사
	교육복지실운영	교육복지관련 업무 수행 및 연계학교 지원		